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2080022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324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2016나20800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수연

피고, 피항소인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변론 종결2017. 3. 21.

판결 선고2017. 4. 25.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가합5719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977,398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F은 2012. 6.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자신의 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직원 1명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왔고, 원고는 2012. 9. 6.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F에 2012. 7.경부터 F이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 원가 중 2012. 7월분 안분금액 일부 137,189,424원, 8월분 안분금액 157,846,327원, 9월분 안분금액 153,941,64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다음에 "갑 제21, 23 내지 2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F은 20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직원 투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 중 각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계약보증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사이행의무에 대한 연대책임까지 분할채무로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홍승구

판사조기열